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3일, 박성민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 11. 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민 의원)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산업기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고유사업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중 하나로 명시하여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출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 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 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생략)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 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예규)에 근거하여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산업ODA”)¹⁾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에너지ODA”)²⁾을 운영 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음³⁾.

1) 일반회계 1931-302

2) 전력산업기반기금 5807-302

3)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이하 “장관”이라 한다) 실시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협력개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이하 생략)

2012년에 시작한 산업·에너지 ODA 사업은 2024년까지 전 세계 34개국 89개 사업에 총 4,29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기술 전수⁴⁾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개도국들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 효율 개선 등 에너지 인프라도 지원하였음⁵⁾.

[표 3] 산업·에너지 ODA 사업 지원현황 (2012~2024년 누적)

구분	지원규모 (억원)	사업 수 (개)	자체 발굴		
			자체 발굴	수원국 요청	MDB
산업ODA	2,887	65	28	37	-
에너지ODA	1,406	24	18	-	6
합 계	4,293	89	46	37	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전 세계적인 ODA 사업 추세는 단순 인도주의적 공여가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에너지 ODA 사업 또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개도국 진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⁶⁾.

4) ODA를 통한 산업기반 조성 및 기술 전수 사례

- (공급망)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지원(몽골, 우즈베키스탄)
- (농기계) 농기계 부품 설계 및 생산 지원(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자체설계 및 생산 지원(파라과이, 인도네시아)
- (섬유)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5)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 지원 ODA 사례

- (농촌 에너지인프라) 전력이 미공급되는 농촌지역의 전력화 지원(가나, 모잠비크)
- (마이크로그리드) 재생에너지(태양광+ESS 등) 전력공급 지원(에콰도르, 나이지리아)
- (전력효율화) 전력 효율 향상 시스템 구축 지원(세네갈, 온두라스, 도미니카, 인도네시아)

6) 우리 기업들은 산업·에너지 ODA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 정부기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현지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마련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양자적 성과를 내고 있는 산업·에너지 ODA의 중요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고유사업 중 하나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 비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⁷⁾⁸⁾하려는 것으로,

이과 같이 출연금으로 편성·집행한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출연금 관리 시스템(KPASS)을 활용하게 되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DA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국가사무에 해당¹⁰⁾하므로 민간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목인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출연기관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금 활용이 원칙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상 출연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출연금 비목으로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3.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4.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5.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KIAT는 전 사업과정이 전산화되어 사업 관리·운영에 최적화된 출연금 관리 시스템(KPASS)을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보조금 기반 ODA 사업은 활용이 불가능해 과제공고 및 선정,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을 수기로 입력하는 등 비효율 발생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¹¹⁾.

참고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등 출연기관은 ODA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받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출연금 사용이 불가능한 공기업은 보조금으로, 민간단체는 민간위탁으로 편성받고 있음.

주 ODA 예산의 편성 현황

부처	ODA 전담 기관	기관 구분	예산비목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기관 (출연금 사용 가능)	출 연 금
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출연기관 (출연금 사용 가능)	출 연 금
과기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출연기관 (출연금 사용 가능)	출 연 금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기관 (출연금 사용 가능)	보 조 금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공 기 업 (출연금 사용 불가)	보 조 금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공 기 업 (출연금 사용 불가)	보 조 금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민간단체 (출연금 사용 불가)	민간위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재원사용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커, 일단 민간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사후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업·에너지ODA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출연금은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재원사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큰 반면, 보조금은 개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출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별적 근거가 불필요하지만 재원사용에는 제한적임. 출연금과 보조금은 사후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비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르는 반면, 보조금은 사후정산하여 국고반환이 원칙임.

[붙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 국의 정부 · 기업 · 대학 · 연구 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 기업 · 대학 · 연 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② (생 략)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u>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u> <u>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